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3일, 홍기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2.04.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3.04.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3.05.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홍기원)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품질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시억)

가. 위임내용 구체화 및 품질적합 증빙자료의 정보망 입력 의무화

(안 제57조제1항, 제5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u>공급 및 보관</u>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드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 ----- ----- -----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 ② (현행과 같음)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신 설> ③·④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제2호에 적합하다는 증빙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개정안 제57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5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시행령 제95조제1항¹⁾ 각 호에 해당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품질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관리 업무지침」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동 지침 제32조제1항에서는 수요자²⁾가 레미콘·아스콘을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함)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급원 승인권자³⁾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승인권자가 승인, 승인 거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 지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수요자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공급원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재공급원 승인 등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고,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취소, 점검 등은 수요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⁴⁾이므로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⁵⁾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다만, 안 제57조제1항은 건설자재·부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공

2) 건설공사에 레미콘·아스콘 등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정의) 14. “공급원 승인권자”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4) 현행법 제88조제5호에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57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5)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0. 10.)

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의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문구를 추가하여 동 지침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재공급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누가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을 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제32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
	2.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험 또는 확인
	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1)·(2) (생략)
	사. 레미콘·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지 여부.
	(1)·(2) (생략)
	아.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③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확인되

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배합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
 4.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 최근 2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공급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⑤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⑥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①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5조(자재공급원의 특별점검) ①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하 생략)

다음으로, 개정안 제57조제3항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품질이 적합하다는 증빙자료(품질검사 대장 등)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⁶⁾에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건설사업자 등이 현장검사를 통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확

6) CSI(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https://www.csi.go.kr/>
2019년에 구축된 동 시스템은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사고, 건설품질검사 관리 등 건설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관리·제공함.

인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품질검사 결과가 인터넷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가 품질관리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품질검사 대장 등 증빙자료를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안 제57조제3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제2항제2호⁷⁾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사용 시 그 증빙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는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자재·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안 제57조제3항에서 증빙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와 동일하므로, 안 제5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은 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과 중복되는바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57조제3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증빙을 언제까지 CSI에

7)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입력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데,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증빙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력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품질검사 대행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의무화
(안 제60조제1항 · 제3항 ·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 ----- ----- ----- -----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u> --- ----- ----- -----
--	--

현행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국립·공립 시험기관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건설사업자 등이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할 경우 최근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는 시점부터 검사결과를 입력하기까지의 전(全) 과정을 CSI를 통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발급, 검사결과 지연입력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대행기관 품질시험 부실 주요 적발현황 】

(단위: 건)

평가항목	부실 내용	2018	2019	2020	계
품질시험검사 실적관리 미흡	○ 성적서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적정하게 입력하지 아니함	42	39	54	135
거짓성적서 발급 등	○ 시험검사자 1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정으로 시험·검사하여 성적서 발급 ○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이 품질검사를 실시	2	2	6	10
계		44	41	60	145

다만, 현행법 제60조제3항에서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이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⁹⁾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이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언제까지 CSI에 입력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바,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력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https://www.calspia.go.kr/>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도면 등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등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구축된 것으로, 품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인허가·보상 메뉴의 하위메뉴로 “품질검사 성적서”를 등록해 왔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에 앞서 소속기관인 지방국토청 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2021년 6월부터 CSI에서 검사성적서 등록 및 자료공유 기능 등을 시범운영중이고, 기존 CALS에 등록한 품질검사 데이터를 CSI로 이전 완료('21.7.1.~'21.11.30.)하여, 법 개정예 따라 정보시스템을 CALS에서 CSI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다. 품질검사결과 정보망 미입력 등에 대한 벌칙(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제89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생략) ③ ~ ⑤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설>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의2. (생략)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은 안 제60조제3항에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¹⁰⁾가 검사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을 CALS에서 CSI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영업정지 규정에 반영한 것인데,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영업정지 규정에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89조제5호의2는 안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안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CSI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 미입력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품질검사 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하여

10) 동 개정안 제31조 등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9. 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용어가 변경됨

유사입법례들은 벌칙(형사처벌)이 아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60조제3항에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CALS에 입력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2021년 11월)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형사처벌로 할지 또는 과태료 등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특정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다수의 유사입법례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재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단체¹¹⁾는 안 제89조와 관련하여 CSI 입력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적 신고의무 불이행인데 이에 대하여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보망 미입력·거짓입력에 대한 처벌 관련 유사입법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72조제2항¹²⁾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1) 대한건설협회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31조제1항¹³⁾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의2. 제66조의2제2항¹⁴⁾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62조제3항¹⁵⁾,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¹⁶⁾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6항¹⁷⁾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14)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SI를 이용하여 제출함
- 16) ⑧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SI를 이용하여 제출함
- 17)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김정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9. 기타 사항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5.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재공급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설자재·부재에 관한 품질검사 대장 등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기한을 현행대로 7일로 하며, CSI에 입력하는 대상의 위임규정을 명시함.

또한,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성적서 발급 7일 이내에 CSI에 입력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대상에 CSI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며, CSI 미입력 사항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자재공급원에 관한 사항은 수요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7조제1항).

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부재의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도록 제55조제3항을 신설하고, 입력기한을 현행대로 7일로 하며, CSI에 입력하는 대상의

위임규정을 명시함(제55조제3항 신설, 제55조제5항).

다. 품질검사 대행 시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현행대로 7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를 영업정지 대상에 추가하고, 미입력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제89조제5호의2 삭제 및 제91조제3항제12호의2 신설).

마. 품질시험 및 검사 위반의 영업정지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으로 한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안 제57조제1항 중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을 “공급(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발주자
2.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안 제60조제3항 중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9조제5호의2를 삭제한다.

안 제91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 -----.	②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 ----- ----- -----	7. ----- ----- ----- ----- -----
가. ~ 마. (생략)	가. ~ 마.(현행과 같음)	가. ~ 마.(개정안과 같음)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	바. ----- ----- -----	바. ----- ----- -----

질검사 내용을 제 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생략) ③ ~ ⑤(생략)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현행과 같음)	-----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사. (개정안과 같음) ③ ~ ⑤(개정안과 같음)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

⑤ -----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공급(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u>는 자의 승인, 승인 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u> -----.
	<u><신 설></u> <u><신 설></u>	1. 발주자 2. 제39조에 따른 <u>건설사업관리 업무</u>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u><신 설></u>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u><신 설></u>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u>건설사업자 또는 주택</u> <u>건설등록업자가 제2</u> <u>항제2호 중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건설</u> <u>자재·부재를 사용</u> <u>하려는 경우에는 품</u> <u>질검사 대장을 포함</u> <u>한 제2호에 적합하</u>	②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③·④ (생략)	<u>다는 증빙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 ----- ----- ----- ----- ----- ----- ----- -----. <u>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u>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u>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u>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 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품질검사</u> <u>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u>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u>품질검사</u> <u>를 하는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	---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 ----- ----- -----.	제89조(벌칙)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5의2.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u>	<u><삭제></u>
<u>5의2.</u> (생략)	<u>5의3.</u>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u>5의2.</u>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9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 ----- -----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신설>

13. ~ 16. (생략)
④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3. ~ 16.(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

		<u>바목의 개정규정은</u> <u>이 법 시행 이후</u> <u>실시하는 품질시험</u> <u>및 검사부터 적용</u> <u>한다.</u>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으로 한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공급”을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

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제6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을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8조제5호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u>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u> 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생략) ③ ~ ⑤ (생략)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 ②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우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 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신 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 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② -----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
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
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

.....

.....

.....

1. · 2. (현행과 같음)

④ _____

제3항 _____

_____.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
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중
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

-----품질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 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

제88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57조제3항-----

6. 제57조제4항-----

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 사용한 자 7. ~ 10. (생략) 제91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u><신설></u> 13. ~ 16. (생략) ④ (생략)	----- ----- ----- 7. ~ 10.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 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 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 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입력한 자</u> 13. ~ 1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